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00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조계원·주철현·양문석

김원이 • 윤준병 • 이기헌

오세희 · 임미애 · 민병덕

강유정 · 김우영 · 양부남

박해철 • 박수현 • 박지원

문금주 · 서삼석 · 박희승

박용갑 의원(19인)

제안이유

최근 환경부는 홍수·가뭄·용수 수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 14곳을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음.

국가유산청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기본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시 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환경부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전협의도 없 었을뿐만 아니라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유산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하지만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및 국정감사 이후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실태파악 결과, 총 14개 후보지 중 10개 후보

지에서 국가유산 또는 매장유산이 발견되었고, 특히, 금강 및 섬진강 구역에서는 명승 유물 및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는지 미리 조사·예측·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8 조의2제1항 신설).
- 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은 것으로 함(안 제3 8조의2제2항 신설).
- 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8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① 근현대문화유 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 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수립기관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한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8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서의 개발사업 협의) ① 근현
	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
	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u>아니하다.</u>
	② 제1항에 따라 계획수립기관
	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를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
	8조에 따른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개
	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
	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